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해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과 수를 개정 (안 제2조)

1) 연서주민 연령 : 19세이상 → 18세 이상

2) 연서주민 수 : 200명 → 15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전략담당관-3770(2021.11.15.)]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7326(2021.11.1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1. 22. ~ 12.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세이상 200명”을 “18세 이상 1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200명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 18세 이상 150명-------.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백 두 현